
디자인심사기준 일부개정(안)



2025 4.

I. 주요 개정 배경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 유사판단 기준 완화

- (선출원주의) 법리상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간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기본적으로 비유사로 판단하고, 선출원주의 적용은 불가
- 따라서 선·후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범위가 거의 동일하면, 중복 권리가 성립가능하고 나아가 제3자에게 중복 침해주장이 가능해 혼동발생 가능
- (관련디자인) 현행은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은 비유사로 보아 관련디자인 적용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상기 선출원 사례와 동일한 경우 전체디자인과 관련디자인간이라도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게 해달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음

* 한중일 디자인 포럼('24.9.3.)

□ 차량 내부디자인 조합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 차량의 대시보드, 시트 등으로 구성된 실내디자인의 조합에 대해 심사관별로 의견 차이가 있어 심사일관성 유지를 위해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필요

□ 디자인의 설명 기재 간소화

- 관행적으로 심사관이 '디자인의 설명' 부족 또는 부적절 기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출원인의 의견제출 및 보정서 작성 부담을 가중시키며, 최종 등록여부 결정까지 시간이 지연됨

□ 정당한 권리자의 재출원 심사기준 마련

-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요건, 소급효 인정여부 등 명확한 기준 마련

II. 개정 내용

1

전체-부분디자인 간 유사판단 기준 완화

□ 선출원주의 및 기본-관련디자인 간 요건 완화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면 양 디자인 간 선출원주의(법제46조)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

*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한 경우

- 동일한 상황에서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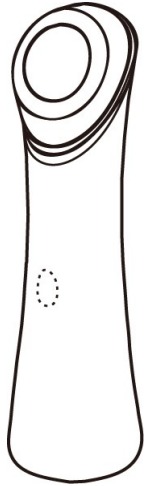
< 선출원주의 적용 요건 완화 >

현 행			개 정(안)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7장 선출원>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7장 선출원>		
3 적용유형 및 선출원의 지위			3 적용유형 및 선출원의 지위		
3.1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유형			3.1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유형		
유형	선출원 디자인(A)	후출원 디자인(A, A')	유형	선출원 디자인(A)	후출원 디자인(A, A')
1	완성품	완성품	1	완성품	완성품
2	부품	부품	2	부품	부품
3	한 별의 물품	한 별의 물품	3	한 별의 물품	한 별의 물품
4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4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은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		

는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 선출원주의 적용 예)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피부마사지중간에 위치한 버튼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므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을 출원한 후 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선출원	후출원
	
피부마사지기의	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	부분디자인

< 관련디자인 적용 요건 완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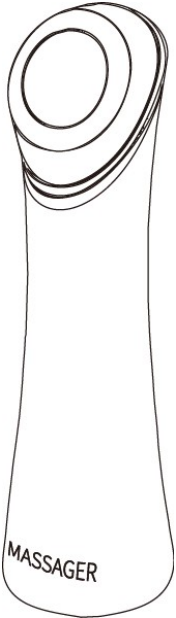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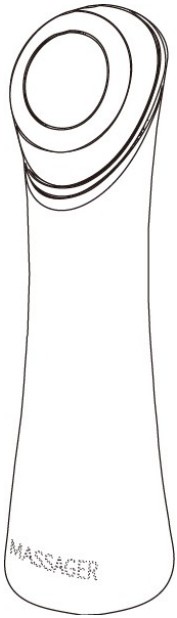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6장 관련디자인> 2 관련디자인의 정의 2.2 법 제35조(관련디자인)에 따른 관련디자인이란 다음의 경우와 같다. ✳ 예)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6장 관련디자인> 2 관련디자인의 정의 2.2 법 제35조(관련디자인)에 따른 관련디자인이란 다음의 경우와 같다. ✳ 예)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유형	기본디자인(A)	관련디자인(A')	유형	기본디자인(A)	관련디자인(A')
	등록	후출원		등록	후출원
	선출원	후출원		선출원	후출원
	동일자 출원	동일자 출원		동일자 출원	동일자 출원
1	완성품	완성품	1	완성품	완성품
2	부품	부품	2	부품	부품
3	한 별의 물품	한 별의 물품	3	한 별의 물품	한 별의 물품
4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4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 등록된 A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선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 A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 A'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A ≍ A'의 관계임).			※ (현행과 같음)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은 원칙적으로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		

	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면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 예) 다음 사례와 같이 기본디자인은 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이고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은 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으로,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문자부분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므로 관련디자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본디자인이 부분디자인이고 관련디자인이 전체디자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본디자인이 부분디자인이고 관련디자인이 전체디자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

제5부 심사일반
<제11장 부분디자인>

8 선출원

8.1 부분디자인에 대한 선출원 규정은 부분디자인등록출원 간에만 적용

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
	
피부 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	피부 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

제5부 심사일반

<제11장 부분디자인>

8 선출원

8.1 부분디자인에 대한 선출원 규정은 부분디자인등록출원 간에만 적용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부분디자인에 관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유사한 경우에는 전체디자인등록출원과 부분디자인등록출원 간이라도 예외적으로

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부분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다.	<u>선출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u>
---	--------------------------

2 자동차 내부디자인 조합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 자동차 내부디자인 조합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 자동차 등 내부 공간에서 대시보드, 계기판, 운전대, 조작부, 콘솔 박스, 의자 등으로 구성된 내부디자인의 조합은 전체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보아 1디자인 1출원으로 인정

< 자동차 실내장식 전체 및 부분디자인 인정 사례 >

현 행	개 정(안)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10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3 판단방법 3.4 둘 이상의 물품을 결합한 출원된 물품의 1물품 인정여부 3.4.1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 3.1 및 3.2에서 예로 든 물품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10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3 판단방법 3.4 둘 이상의 물품을 결합한 출원된 물품의 1물품 인정여부 3.4.1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 3.1 및 3.2에서 예로 든 물품에 준하여 결정한다.

3.5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표현된 경우의 1디자인에 대한 판단방법

3.5.1 1디자인인지 여부는 출원서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하와 같이 전체 또는 각 부분으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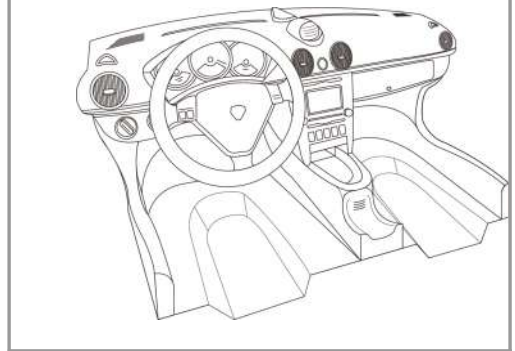
(1)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

(가) ~ (나) (생략)

(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지만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 예) 미세분쇄기용 스윙 해머

< 자동차 내부차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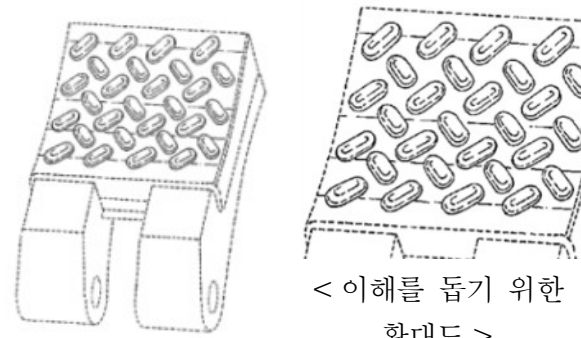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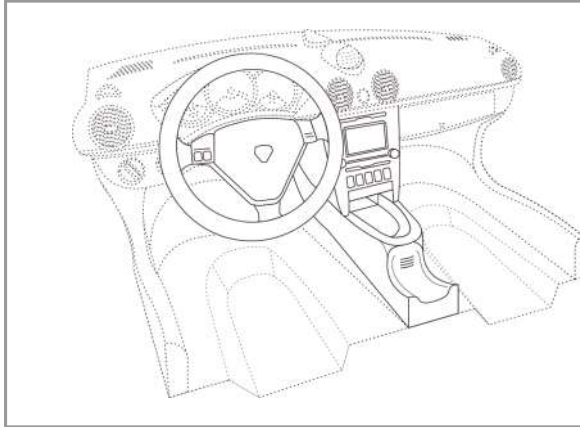
3.5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표현된 경우의 1디자인에 대한 판단방법

3.5.1 1디자인인지 여부는 출원서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하와 같이 전체 또는 각 부분으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본다.

(1)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

(가) ~ (나) (생략)

(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지만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등

 < 이해를 돕기 위한 확대도 >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 예1) 미세분쇄기용 스윙 해머  < 이해를 돕기 위한 확대도 > ✧ 예2) 자동차 내부차체 
--	--

□ 차량 내부디자인 조합에 대한 물품명칭 제시

현 행	개 정(안)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9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3 물품의 명칭 기재방법 3.1.3 실제 거래계에서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용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여 표현한 것이라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9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3 물품의 명칭 기재방법 3.1.3 실제 거래계에서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용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여 표현한 것이라

면 “○○○용 부재” 등의 명칭도 가능하다. 다만,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없이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다 ✖ 예) Ⓢ 불인정 창틀용 부재, 건축용 부재 3.2 물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2.1 물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예 1) 경첩(부적합), 안경용 경첩(적합) ✖ 예 2) 입력장치(부적합), 휴대용 문자입력장치(적합)	면 “○○○용 부재” 등의 명칭도 가능하다. 다만,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없이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다. ✖ 예) 인정 창틀용 부재, 불인정 건축용 부재 3.2 물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2.1 물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예 1) 경첩(부적합), 안경용 경첩(적합) ✖ 예 2) 입력장치(부적합), 휴대용 문자입력장치(적합), <u>자동차 내부차체(적합)</u>
--	--

3 디자인의 설명 기재 간소화

□ 디자인의 설명 기재기준 명확화

- 재질,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도, 심사관이 도면을 보고 출원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1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1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 2.2 디자인의 표현에 구체성이 있을 것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2.1. (생략) <u>2.2.2 재질 또는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u> 2.2.3 ~ 2.2.23 (생략)	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 2.2 디자인의 표현에 구체성이 있을 것 (생략) 2.2.1. (현행과 같음) <u>2.2.2 (현행과 같음)</u> [심사관 참고]  인정 재질, 크기, 사용목적,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도, 심사관이 도면을 보고 출원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2.3 ~ 2.2.23 (현행과 같음)
---	---

4 **정당한 권리자의 재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재출원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요건, 소급효 인정여부 등 명확한 기준 마련**

개정안(제4부제5장) 신설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

1 취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설사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취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즉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에 소급하는 것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요건

2.1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무권리자의 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전에 있었어야 하고, ② 그 무권리자의 출원이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③ 정당한 권리자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을 해야 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부가 출원해야 한다.) ④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있어야 하며, ⑤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디자인과 무권리자가 한 출원의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2.2 심사관은 2.1.③의 정당한 권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 관련 정보제공인, 무효심판 청구인, 거절결정서 내용, 심결문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시기

무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후 정당한 권리자가 소급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한다.

4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방법

정당한 권리자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도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권 증명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당한 권리자 출원 소급효의 불인정

4.1 소급효 불인정 절차

4.1.1 상기 ① ~ ⑤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대한 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1.2 불인정예고통지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4.2 불인정의 효과

4.2.1 정당한 권리자 출원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은 실제 출원이 있었던 때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한다.

4.2.2 상기 ① ~ 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 실제 출원은 반려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소급효 없는 출원으로 보고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4.2.3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출원 전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이를 근거로 무권리자 출원을 등록거절을 할 수 있다.

6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효과

6.1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그 사이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5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관련 불인정 예고통지

□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고 증명서류를 미제출 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불인정 예고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안)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3 증명서류 제출 3.1 출원 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3.1.1 증명서류는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제출가능하며 미제출 시에는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 <u><단서 신설></u> 3.1.2~3.1.3 (생 략) 3.2 보정서(의견서 포함) 등을 통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3.2.1 증명서류는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제출가능하다. 3.2.2 보정서를 통해 신규성상실예외를 주장했으나 증명서류가 미제출되면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 <u><단서 신설></u>	3 증명서류 제출 3.1 출원 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3.1.1 증명서류는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제출가능하며 미제출 시에는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 <u>다만 출원인·대리인의 실수 등으로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불인정 예고통지를 할 수 있다.</u> <u>※ 예) 출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란 아래에 인터넷 주소(URL 링크), 디자인의 형태, 공개일 등을 기재한 경우</u> 3.1.2~3.1.3 (현행과 같음) 3.2 보정서(의견서 포함) 등을 통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3.2.1 증명서류는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제출가능하다. 3.2.2 보정서를 통해 신규성상실예외를 주장했으나 증명서류가 미제출되면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 <u>다만 출원인·대리인의 실수 등으로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불인정 예</u>
---	--

	고통지를 할 수 있다. 위 3.1.1에서 예를 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6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 재심사 청구기간 수정

- 재심사 청구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개정되었으나,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5부 심사일반 <제8장 재심사> 3 청구절차 및 효과 3.2 재심사 청구의 기한 3.2.1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5부 심사일반 <제8장 재심사> 3 청구절차 및 효과 3.2 재심사 청구의 기한 3.2.1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7 국제디자인심사기준의 특례 정비

□ 국제디자인출원 공개 기간 반영

- 헤이그 협정 공동규칙에서 국제등록공개일은 국제출원일로부터 12개월로 연장되어 관련 내용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

현 행	개 정(안)
제5부 심사일반	제5부 심사일반

<제13장 국제디자인심사기준의 특례>

2 연혁 및 주요 개념

(생략)

헤이그조약 제31조(1)는 헤이그 개정협정과 제네바 개정협정에 동시가입한 국가가 다른 동시가입국을 지정할 경우, 제네바 개정협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네바 개정협정의 관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헤이그 개정협정의 활용률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국제사무국을 중심으로 제네바 개정협정으로의 일원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는 총 79개 계약당사자가 가입('23.12월 기준)하여 96개국에서 제도 활용이 가능하며 ID5국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2.2.4 국제등록공개일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계약당사자 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소정의 형식요건 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공개한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

따라서 “국제등록공개일”이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공개가 있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출원인은 국제등록의 즉시 공개(immediate publication)를 신청(헤이그

<제13장 국제디자인사기준의 특례>

2 연혁 및 주요 개념

(생략)

헤이그조약 제31조(1)는 헤이그 개정협정과 제네바 개정협정에 동시가입한 국가가 다른 동시가입국을 지정할 경우, 제네바 개정협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네바 개정협정의 관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헤이그 개정협정의 활용률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국제사무국을 중심으로 제네바 개정협정으로의 일원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2.2.4 국제등록공개일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계약당사자 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소정의 형식요건 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공개한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

따라서 “국제등록공개일”이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공개가 있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출원인은 국제등록의 즉시 공개(immediate publication)를 신청(헤이그

협정 공통규칙 제17조(1)(i))하거나 국제출원일로부터 최장 30개월까지 공개의 연기(deferment of publication)를 신청할 수 있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ii\)](#)).

(생략)

3.3 공개의 연기

3.3.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6개월](#)(standard publication period)이 되는 날 공개되나(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 다만, 추가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ii\)](#)).

(생략)

3.6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3.6.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등록일”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보고 신규성예외주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3.6.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증명서류는 [국제출원서](#) 그 취지를 기재한 경우 [“국제등록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4.2 선출원(제46조)의 판단

4.2.1. 국제등록출원된 복수디자인들 간에 상호 유사한 디자인이 있을 경우, 동일자에 동일인이 출원한 것이므로 [선택요구서와 함께](#) 법 제46조에 의한 거절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기본 또는

협정 공통규칙 제17조(1)(i))하거나 국제출원일로부터 최장 30개월까지 공개의 연기(deferment of publication)를 신청할 수 있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6조\(1\)\(a\)](#)).

(생략)

3.3 공개의 연기

3.3.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12개월](#)(standard publication period)이 되는 날 공개되나(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 다만, 추가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6조\(1\)\(a\)](#)).

(생략)

3.6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3.6.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등록일”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보고 신규성예외주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3.6.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증명서류는 그 취지를 기재한 경우 [디자인등록어부결정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4.2 선출원(제46조)의 판단

4.2.1. 국제등록출원된 복수디자인들 간에 상호 유사한 디자인이 있을 경우, 동일자에 동일인이 출원한 것이므로 법 제46조에 의한 거절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기본 또는 관련디자인으로의

관련디자인으로의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등록결정한다.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등록결정한다.
----------------------------------	-------------------------

8 기타 사항 정비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일부심사 대상 품목류가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하는 시행규칙이 개정(‘20.9.1. 시행)되었으나, 심사기준의 관련법령에 반영이 되지 않아 이를 반영

현 행	개 정(안)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9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u>제2류, 제5류 및 제19류</u>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9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u>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u>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	--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을 확대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제36조 제2항 삭제, ‘23.12.1. 시행)되었으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23조(서류의 원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2항 또는 (이하 중략)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제23조(서류의 원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이하 중략)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2.5.2 (생략) [심사관 참고] ☞ 출원인이 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통해 신규성 상실 예외의 취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사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디자인심사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함. 이후 절차는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한 때와 같음 제5부 심사일반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2.2. (생략). ※ 서류의 원용(규칙 제23조)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 제2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	2.5.2 (현행과 같음) [심사관 참고] ☞ 출원인이 법 제36조에 따라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통해 신규성 상실 예외의 취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사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디자인심사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함. 이후 절차는 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한 때와 같음 제5부 심사일반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2.2. (현행과 같음) ※ 서류의 원용(규칙 제23조)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 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

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6 (생략)

※ 서류의 원용(규칙 제23조)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

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6 (현행과 같음)

※ 서류의 원용(규칙 제23조)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

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	---------------------

○ 디자인보호법 제49조 및 제119조 개정내용을 심사기준의 관련법령에 반영

현 행	개 정(안)
제4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3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제4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3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디자인보호법 ▼

제49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 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

제49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 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19.>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디자인보호법 ▼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u>3개월</u>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	--

Ⅲ.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 개정안 의견문의(청내 및 유관기관) : '25. 4~5월
-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등 : '25. 5~6월
- ☐ 시행 : '25. 6월